

## 인쇄하기

## 지방의원 당선시 축하 화환 가능 여부 질문

게시자 \*\*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415

이번 6.13 지방선거후 당선되는 당해 자치단체 지방의원 등에게 1. 의회사무국 명의로 5만원 이내의 축하화환을 보내도 무방한지. 2. 6월30일까지가 임기인 현재 의회의장 명의로 같은 축하 화환을 보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해석과

2018-04-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의회에서 지방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쇄하기

###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선물

게시자 양\*\*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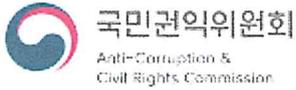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관계에 있는 기관입니다. 곧 다가올 6.13 지방선거 당선자에게(아직 임기 개시 전) 소액의 당선 축하선물(꽃다발, 케익 등)을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질의 드립니다.

청탁금지해석과

2018-05-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인쇄하기

**퇴직후 전별금 지급 및 당선자 화분 지급**

게시자    백\*\*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236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재직중인 분은 3선인 관계로 더이상 출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퇴임식이 6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 퇴임 이후 그분에게 직원들이 전별금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직원들이 축하 난이나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탁금지해석과

2018-05-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별금 모금 및 제공이 공공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